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22 선고 2019가단5217769 판결 [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

담당변호사 김진우

피고F

변론 종결2019. 12. 18.

판결 선고2020. 1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에게 41,352,000원, 원고 B에게 31,014,000원, 원고 C에게 20,617,000원, 원고 D에게 5,167,000원, 원고 E에게 5,167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. 8. 9.부터 2019. 11. 26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한경환

별지